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8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전홍배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군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달성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육성·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형식적·관 주도적 협치체제에서 벗어나 군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

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등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민간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맞이, 신년인사회(군 단위 행사) 등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2024. 1. 9.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 과.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재정법」(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10. 28. 일부 개정·시행)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